

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1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8년 2월 22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,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기능(안 제2조)

-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기능 특성화 및 각 기관간 협동계획,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

나. 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

-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, 임명함

다. 임기 및 회의(안 제4조~제6조)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
라. 소위원회(안 제7조)

-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

마.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및 수당지급(안 제10조, 제11조)

-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조사, 연구,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음

4. 의안전문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제안자 의견

- 진천·음성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충청북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
2.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·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
3.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
4.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·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
5.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
6. 기타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'도지사'라 한다)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국토해양부, 충청북도 및 진천군·음성군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
2.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그 밖의 혁신도시
관련기관·경제단체 등에 속한 자
3.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
4. 도시계획 및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4조 (임기)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회의) ① 도지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 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(과)장이, 서기는 같은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9조 (서면심의) 도지사인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, 서면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제10조 (관계기관 등 협조요청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·단체·전문가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 (수당 등)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 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체

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31조(혁신도시관리위원회)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2 이상의 시·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(이하 "공동혁신도시"라 한다)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
2. 혁신도시의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
3.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
4.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·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
5.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
6.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③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·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·도지사 및 건설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,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,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·대학·연구소·경제단체에 속한 자 중에

서 시·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.

⑤위원장은 시·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⑥그 밖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같은 법 시행령

제32조 (혁신도시관리위원회)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·도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가 협의하여 정한다.